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244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	---

1. 공익법인등에 기부 목적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2
--	---

I. 개요

1. 강명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244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명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18.

(3) 회 부 일 : 2025. 2.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하여 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공익법인등에 기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부예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공익법인등에 기부 목적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강명구의원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 공익법인등에 기부 목적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85조의11) ○ 적용대상 -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하는 자(공익법인등)에 기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부동산 양도소득 계산 방식 - 부동산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부예정금액**차감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기부예정금액 =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익법인등에 기부하려는 금액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 강명구의원안 2025. 2. 18. 발의(의안번호 8244)

☐ 개정안은 거주자가 ‘공익법인등’에 기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부예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1)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

1)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으로, 학자금·장학금·연구비의 보조, 학술, 자선 등 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하는데,

세법²⁾에서는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아래의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등’으로 정의하여 종교단체·공익단체 등 법인이 아닌 단체 등도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익법인등의 범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아래 사업을 하는 자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현행 세법은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익성 기부금에 대하여 일정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기부금액의 15%(1,000만원 초과 기부금의 경우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³⁾
- 기부금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⁴⁾하며, 최근 10년간 개인기부금은 2014년 7.7조원에서 2023년 11.5조원으로 49.4% 증가한 반면, 법인기부금은 4.9조원에서 4.5조원으로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
 -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은 제외한다)의 구휼(救恤)
 - 다.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
 - 라.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 1)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 2)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 3) 환경보전
 - 4)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 5) 보건·복지 증진
 - 6)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
 - 7)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2.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기부금 현황]

(단위: 조원)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개인기부	7.7	7.9	8.2	8.3	8.8	9.2	9.2	10.3	10.7	11.5
법인기부	4.9	4.8	4.6	4.6	5.3	5.2	5.2	5.3	4.4	4.5
합 계	12.6	12.7	12.9	13.0	14.5	14.5	14.4	15.6	15.1	16.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 개정안은 거주자가 공익법인등에 기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 계산 시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부예정금액을 차감하도록 함으로써 기부예정금액만큼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소시켜 선의의 기부문화를 장려하려는 취지로 이해됨.⁵⁾

개정안에 따른 양도소득세액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u>기부예정금액</u> =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양도소득세액

자료: 「소득세법」 제92조

5) 일례로 기부자가 부동산 처분 자산의 50%를 노후자금으로, 나머지 50%를 기부하려는 경우에도 기부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기부를 주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은 공익법인등에 기부 목적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관련 기부금액이 증가하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공익법인등을 통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기부금액의 15%(1,000만원 초과 기부금의 경우 3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하는 세제상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 특례 신설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양도세 감면 특례는 지역 균형발전, 공익사업 지원 및 국민 생활 안정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⁶⁾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기부를 망설이게 되는 개인적인 상황까지 고려하여 특례를 신설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셋째, 개정안은 기부대상인 “공익법인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법인세법」 및 각 시행령 규정의 “공익법인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6)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7조),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97조의7),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4) 등

□ 기획재정부는 거주자가 공익법인등에 직접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양도’의 정의⁷⁾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만약 부동산을 양도한 후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의 출처가 양도대금인지 개인 재산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48

7)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